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2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관계 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7.1.시행)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안 제14조 제4호)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26조 제4항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27. ~ 6. 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제26조 제4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의 자녀
제26조(연회비) ① ~ ③ (생 략) ④ 1. ~ 2. (생 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 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제26조(연회비) ① ~ ③ (생 략) ④ 1. ~ 2. (생 략)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등록 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참고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7.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7.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조례개정 관련참고자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협조 요청

□ 추진목적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개편, 용어 등 조례개정이 수반됨에 따라,
 - 지자체 현황 파악과 함께 조례 개정방향 등을 공유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

□ 추진경과

- 복지부·지자체 **합동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키오프위크숍**: '18.11월
- 지자체 **특화서비스** 및 **관련 조례 현황 조사**: '18.11~12월
- 복지부·지자체 **합동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 '19.1.14일
 - 지자체 서비스 조사결과 및 **조례 개정방향 공유**

□ 조사결과

- 개별 지자체는 조례(825개), 지침(6개), 자체계획(59개), 중앙부처 개별 법령(12개)에 근거하여 총 902개의 사업을 운영 중
- 이 중 장애유형·등급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사업이 694개에 해당

선정기준	합계	일괄 지원	자율지원					
			소계	중형중 구분 ¹⁾	장예등금 (구지 ²⁾)	유형 및 혼합 ³⁾	개발비명 준용 ⁴⁾	명시적 규정없음 ⁵⁾
연계	902	208	694	393	106	25	167	3
개발비명	12	5	7	3	1	0	3	0
광역	69	15	54	30	6	3	15	0
지역	756	160	596	335	92	21	145	3
지회	6	1	5	4	1	0	0	0
자치지회	59	27	32	21	6	1	4	0

○○시 ○○○ 도청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3조(운영원칙)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3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4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수우요를 감면할 수 있다.	23조(운영원칙)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7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30퍼센트 범위에서 수우요를 감면할 수 있다.
○○도 도립공인 관리 조례	21조(시설사용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 발급등록일 이후부터 30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1조(시설사용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 발급 등록일 이후부터 30일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시 장애인우호원 편의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현행한 직무수행에 위하여 지원이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현행한 직무수행에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증,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별도기준 검토:** 전체 장애인·장애정도 또는 7.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의 추가심사사항을 활용하는 형태로 선정기준 변경
- ※ 다만, 추가심사사항은 22년까지 종합조사 확대에 따라 단계적 개편

[개정 예시]

i) 선정기준을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례명	현행 조례	조은 개정(안)
○시외회 장애의원 의정 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 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ii) 선정기준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경우

조례명	현행 조문	조문 개정(안)
○시인 장애아·청소년 문화·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2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인·장애아·청소년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아청소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장애아·청소년	제2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인·장애아·청소년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아청소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장애아·청소년
○시인 충동장애아 교육보호지원 지원 조례	제2조(목적) 이 조례는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아·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의 교육·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아 2. 충동장애아: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아 3. 교육보호지원: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보호지원	제2조(목적) 이 조례는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아·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의 교육·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아 2. 충동장애아: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아 3. 교육보호지원: 「충동장애아(이하 "장애아"라 함)에 대한 교육·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보호지원

- 1) 종경준: 1~3급, 4~6급으로 나누어 기준으로 활용
- 2) 장애등급(구간) : 1급, 1~2급/3~4급/5~6급, 1~5급 등 등급·등급구간 사용
- 3) 유형 및 등급 혼합: 시각4급 등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 혼합된 기준 사용
- 4) 개별법령준용: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 등 개별법령 기준을 준용
 - 장애인연급법(5개), 장애인고용촉진(8개), 교통약자법(6개), 지방서비스(83개), 활동지원법(8개, 4등급기준·인정조사업제 활용 등), 열차유아모육법(2개)
- 5) 명시적 규정없음: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수가 높은 자 등

□ 조례 등 개정방향

- ➡ 조례 등 사업운영근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개정필요여부 검토

개정 유형	대상 조례	비고
①단순용어 개정	‘장예등급’, ‘1~3급’ 및 ‘4~6급’, ‘1~6급’, ‘등급의’ 등 등급계 례치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	조례 개정 필요
②별도와 기존 검토	선정기준을 장예등급(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유형 및 등급 혼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③개별법령 준용	개별법령을 준용, 조례상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 조례 상 명시적 규정 없이 개별법령을 준용하는 조례	조례 개정 필요
④개정필요 없음	등급, 급수 등 표현 없이 ‘장예안’, ‘동등장예안’ 용어 사용 조례	

- ① 단순용어 변경: 7.1일부터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아래용어로 대체
- '장애등급'→'장애정도', '1·3급'→'심한 장애', '4·6급'→'심하지 않은 장애', '1·6급'→'등록장애인', '등급외'→ '장애미해당'

[개정 예시]

조례명	현행 조문	조문 개정(안)
○○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장용의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록자 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4조(주차장용의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iii) 선정기준을 장애인등록 '추가심사사항'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 7.1일부터 추가심사사항>

구분	현행 기준	7.1일
도형 실재장애	실지절단 병합·지적 정선 1급, 하지절단·자변별 1~4급, 하지(관절)·시각 1~5급, 척추 2~5급, 척각(병합) 3~5급, 신장·장루·요루 2급, 심장·호흡기·간·자폐성 1~2급	언급공간에서 장애물상시물·과물·복토시, 추가실사시항으로 해달여부만 표시
장애 인연금	1~2급 및 중증 3급	
장애 인고료	1~2급 및 3급 자변별·시각·지적·자폐· 정선·심장·호흡기·전전증·지적(괄)	

조례명	현행 조문	조문 개정(안)
○○시 중종장애인 고용보조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중종장애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1)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3조의 중종장애인의 분류표상 장애등급 1급, 2급, 중증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중종장애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2)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 33조의 중종장애인을 말한다
○○시 제9종 동계 수우료 기준율 조례	제7조(수우료의 감면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인에 준속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되는 겨울철 등	제7조(수우료의 감면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33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겨울철 등

- ③ 개별법령 준용: 개별부처의 기준변경에 맞춰서 개정

- 개별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조례는 개정불요
- 선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례는 해당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 예시]

i) 개별법령을 그대로 준용한 경우(개정불필요)

법령명	조례(시업)명	현행 조문	조문 개정(안)
장애인 고용법	○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불필요